

장학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지도자 양성과 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장학 기금을 보존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관리)

장학 기금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다음 장학금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적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2. 한신대학생 장학금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4. 해외 유학 장학금

제4조 (자격)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교역자 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역자라 함은 은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 재학생으로서 자격을 구비한 자는 한신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격에 관한 규정은 한신대학이 작성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교육자나 일반 교인으로서 교회 선교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해외유학 장학금

해외유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기관 혹은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학업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5조 (장학 금액)

장학 금액은 총회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선발 절차)

1. 교역자 자녀 장학금

- 1) 노회는 교역자 자녀 장학금의 할당을 받는다.
- 2) 청원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 노회에서 접수하고 노회는 7월 15일까지 적격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3) 총회 본부는 총회에서 선발된 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장학금을 매학기 본인에게 직송한다. 1학기 장학금은 2월 말에, 2학기 장학금은 8월 말에 송금한다.
- 4) 장학생과 추천 목사는 각기 성적표와 의견서 2통을 노회 장학위원회에 매 학기 제출하고 그중 1통은 총회 본부에 송부케 한다.

2. 한신대학생 장학금

한신대학교 교수회는 신학생 장학금을 받을 적격 후보자를 선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지도자 교육 장학금

지도자 교육 장학금 청원서 접수와 선발 결정은 본 이사회가 직접 관리한다.

4. 해외 유학 장학금

해외 유학 장학생의 선발 의뢰가 있을 때 본 이사회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관계 교회나 단체에 추천한다.

제7조 (기한 및 기타)

- 1. 해외 유학 장학금 외의 각종 장학금의 액수와 인원수는 총회가 정한다.
-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3. 총회 본부는 총회에 매년 장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 4.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 5. 본 세칙의 개정은 총회 규칙 개정에 따른다.

1963년 제4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